「표지어음」특약

제 1 조 어음의 발급

표지어음은 은행을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할인식으로 발급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표지어음의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
제3조 가입금액

표지어음의 가입금액은 **1천만원 이상**으로 합니다.

제 4 조 양도방법

표지어음의 양도방법은 어음배서방식에 따릅니다.

제5조 지급

- ① 표지어음은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때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합니다.
- ② 표지어음은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 6 조 지급기일 경과 후 이자

표지어음의 지급기일 경과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 7 조 원천징수

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세금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 합니다.

제 8 조 적용법률

표지어음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음법을 적용합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표지어음 및 구 주택은행의 표지어음은 2002. 9. 23부터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